

6·25전쟁 남북피해 신고 안내드립니다.

신고기간

2011. 1. 3 ~ 2013. 12. 31

신고처

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·군

※ 해외거주자는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간

신고대상

전시납북자

※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(군인 제외)으로서 6·25전쟁 중 (1950. 6. 25 ~ 1953. 7. 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)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

신고인자격

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

※ 6·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에 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별도로 진상조사 신청

신고방법

주소지 관할 구·군 (해외 거주자는 재외 공관) 방문 신고

구비서류

- 가. 납북피해 신고서
- 나. 가족관계 증명서와 제적등본
- 다. 납북 경위서
- 라.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

처리절차

접수된 신고 내용은 시·도 실무 위원회의 사실조사를 거쳐 본 위원회가 심사하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

문의처

자세한 신청방법은 당 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바랍니다.
(전화 02-2020-2518, 2519 / 팩스 02-778-7191)



울산광역시
Ulsan Metropolitan City

대한민국 정부가 6·25전쟁 납북자 신고를 받습니다

- 신고기간 : 2011.1.3 ~ 2013.12.31
- 신고인자격 :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자
- 신고방법 : 주소지 관할 구·군(해외거주자는 재외공관) 방문 신고
- 구비서류 : 납북피해 신고서,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, 납북경위서
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

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을 추진하고
생사확인 및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문의전화

1661-6250

국무총리 6·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

 울산광역시